

# 2019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

선정 항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<b>■ 공통적용 항목</b>	<b>65점</b>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 ▶ 2배 이상 : 15점      ▶ 1.5~2배 미만 : 10점 ▶ 1~1.5배 미만 : 5점    ▶ 1배 미만 : 0점	15점	• 재해율 통계 : 지역별 50인 미만 전업종 전년도 11월 확정 통계 사용
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0점	• 재해율 통계 : 지역별 50인 미만 전업종 전년도 11월 확정 통계 사용
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• 근로자수는 ERP 통계 적용
⑤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 이상, 63년 이전생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 이하, 89년 이후생)	10점	• 장년/청년/외국인근로자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의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로 확인 •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 제출 • 취약계층 기준은 중복 적용 불가
⑥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), 지게차(좌입식) • 해당설비 사진제출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시 인정	5점	• 현장확인 시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선정 취소 • 해당설비 사진제출
<b>■ 자율활동 우수항목</b>	<b>15점</b>	
⑦ 이사가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대상, 강소기업, 일학습병행제 등 인정 받은 사업장	10점	• 인정서*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 * 선정시정기준 해당 사업장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5점	18~19년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
<b>■ 지역별 자율 항목(2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 항목 당 10점 이내)</b>	<b>20점</b>	
⑨ '18~19년도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	5점	• 18, 19년도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확인 (공단 전산 확인, 제출서류 없음)
⑩ '18~19년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사업장	5점	• 18, 19년도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확인 (공단 전산 확인, 제출서류 없음)
⑪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(인정 유지기간 이내)	10점	
<b>■ 가점항목(고용·산업위기지역)</b>	<b>+10점</b>	• 18, 19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된 지역
<b>계</b>	<b>100점</b>	(100점 초과시 100점 적용)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가점항목→공통항목(①→⑥)→우수항목(⑦→⑧)→자율항목 (⑨→⑩~)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'18년 고용·산업위기지역 : 군산, 울산 동구, 거제, 통영, 고성, 창원 진해구, 목포, 영암 ('19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)